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2년 10월 25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화진

●대통령령 제32961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
2.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3. 기본계획의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
제18조제2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여 고시한다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기상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기상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

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*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,

과태료의 불합리한 감경을 방지하고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,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: 기상산업의 지원·육성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계획

<법제처 제공>